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36
----------	------

2024년 6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이종배 의원(찬성 20명)
나. 제안일 : 2024년 5월 27일
다. 회부일 : 2024년 5월 30일
라. 상정일 :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6월 26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배 의원)

가.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단체가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24. 6. 4. ~ 6. 8.) 결과: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p> <p>① 시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 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통일 인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2024년 5월말 기준 6,405명으로 전국(31,370명)의 20.4%로 경기도(35.3%)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음.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수 : 6,405명('24.5.31 기준)] ※ 행정국 제출자료

(단위: 명)

구 분	'24.5.31	'23.1.1	'22.1.1	'21.1.1	'20.1.1
서울시	6,405	6,595	6,776	6,970	7,094
비율(%)	20.4	21.0	21.5	22.1	22.9
전 국	31,370	31,365	31,503	31,521	31,005

※ 서울시가 전국의 20.4%로 경기도 35.3%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며 서울 거주 비율은 매년 소폭 감소추세임.

-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올해 5월 2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별표1)을 개정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였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발취)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36	북한이탈주민의 날	7. 1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를 형성하고,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1)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필요 재원 확보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행정국은 행정안전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함에 따라, 서울시가 관련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 다만, 행사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경비 지원 시 특정 단체에 대한 선심성 지출이 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따른 공정한 공모절차 준수 및 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내실있는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생략)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민간단체 경비 지원 관련 구체적 명시의 필요성 여부 및 유사 조례로의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시장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한정하여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2조의2 중 민간단체 지원 관련 내용(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836
----------	-------------

제안연월일 : 2024년 6월 28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민간단체 경비 지원 관련 구체적 명시의 필요성 여부 및 유사 조례로의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시장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한정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2조의2 중 민간단체 지원 관련 내용(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신 설></u></p>	<p>제12조의2(북한이탈주 민의 날 행사) ① 시 장은 매년 북한이탈주 민의 날에 북한이탈주 민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 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념행 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북한이탈주 민 지원단체 등 민간 단체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서울특별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제12조의2(북한이탈주 민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 포 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 성 및 통일인식 제고 를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u><삭 제></u></p> <p><u><삭 제></u></p>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u> <u>시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u> <u>북한이탈주민 포용과 권익 향상,</u> <u>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u> <u>일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념행사를</u> <u>실시할 수 있다.</u>